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 협력적 인권 개입을 위해서 -*

정 태 육**

I. 책임의 개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논점이 떠오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이 예시한 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다루거나, 혹은 일각의 희망처럼 안보리로 가져가는 책임을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책임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그와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3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에 관한 책임 혹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건인 평화체제의 수립에 소홀한 책임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적 고통을 덜고, 북한 체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개선시키는 국제적 헌신을 생각할 것이다. 필자의 오늘 발표도 그러한 관점에 있다. 즉 북한 체제에 있어 인권적 각성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말해 볼까 한다.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영남대학교 연구년제 수행에 의한 것이며, 2005년 1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05 북한인권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북한은 사실 여태껏 서구 사회에 보편적인 인권 및 자유에 대하여 접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족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한 관념에 적대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와 있다. 그 고유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그간의 비상한 노력은 결국 20세기 말의 경제파탄과 대기근이 증명하듯 실패로 귀결되었다.

북한은 이제 불가불(不可不)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실제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과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은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위해 올바른 방향에서 꼭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이 지적하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에 관한 개선이 없다면 경제 개혁 자체도 성공하기 어렵거나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 미래상이 바람직한 것이 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의 경험과 이론을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지 기술이나 경제의 부문에서만 학습을 애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인권과 자유는 단순한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되고 학습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시장경제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뜬다면, 인권과 자유에도 새롭게 눈을 뜨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필자는 이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함을 말하고 싶다.

물론 북한 정권이 그러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자신들의 체제보전을 위해 인권개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비판에 앞서 국제사회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었나 돌이켜 볼 것을 제안한다. 즉 국제사회가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대하여 북한에 어떤 영감을 주기보다 불신과 적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자는 것이다. 이른바 “상시적 포위 심리(permanent siege mentality)”¹⁾로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북한에 대한 인권적 개입

1) 이러한 심리는 한국전쟁의 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카터 에커트(Carter Eckert)의 표현이다. 여기서는 Selig Harrison,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이홍동 외 옮김, 삽인, 2003), 51쪽에서 재인용.

에서 이러한 고려는 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II.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의 불신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의미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측면과 형태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적든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후의 발표에서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서는 윤곽만 언급하겠다. 무엇보다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론할 수 있고, 이어서 여러 국제인권단체들과 개인들의 헌신, 유엔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의 관여, 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심과 개입 그리고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대화 및 유럽 의회의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북한 인권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틀림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많이 호전되었다. 탈북자들의 경우도 생존형 탈북에서 생계형 즉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북한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은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자국의 헌법과 형사법 등을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조만간 대 사면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변화는 부분적일 뿐 아직 전반적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권과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인권적 간섭에 대하여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여 왔다. 인권법에 대하여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핵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체제전복 혹은 제도전복의 양 대 기둥으로 경계하고 있다. 일종의 저강도 전쟁 (low intensity conflict)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유럽에 대하여는 유럽이 유엔 인권

위원회의 결의안을 주도한 것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과 북한 사이의 인권대화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 특히 영국에 대하여는 금년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중 제네바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빌 라멜 차관을 지목하며 배신감을 토로하였다. 유엔에 대하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벌써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비난하며, 그 결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와 자주적 생활방식"을 얘기하고 자신들만의 "참다운 인권"을 얘기한다. 북한은 아직 인권적 관념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경계와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들 및 민간기구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II.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

그러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인권적 진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권과 자유를 단지 서구중심적 개념으로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탈의 방편으로 취급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말할 때는 그와 다른 것이어야 한다. 비록 역사적으로 인권과 자유의 개념이 서구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과 자유란 어떤 체제이든 두루 필요한 보편화가능한 규제적 규범이어야 한다.²⁾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따른다면 문화와 전통이 다른 나라에 인권적 개입을 할 경우 상호성이 요구된다. 즉 인권적 개입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우월한 지위에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 모두 존중해야 하는 인권의 정신에 기초하여

2) 이 규제적 규범의 개념은 칸트적인 것으로서, 이는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그러나 영원히 현실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규범을 말한다.

상호 인권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제 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과 자유의 정신을 납득시키는 데에 실패하였다다는 것은 어쩌면 국제 사회 자신이 그 보편성과 상호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였다는 점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은 사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많은 논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어떤 실체적 내용을 파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유혹에 빠지면 그것은 곧잘 ‘이성적’ 개인 혹은 ‘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의 개인에 고유한 권리라고 하는 서구적 형이상학으로 소급되며, 그 순간 보편성은 아주 희박한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쥬디스 슈클라(Judith Shklar)나 리처드 로티(Richard Roty)가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구체적 인간의 감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³⁾ 말하자면 인권과 자유란 폭력과 천대에 대한 두려움과 협오의 표현이자 그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과 자유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북한의 체제이념), 신자유주의 등의 체제 어느 곳이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회든 국가권력, 경제권력 혹은 문화권력 등에 의한 폭력과 천대는 항상 빚어질 수 있다. 즉 인권과 자유란 곧 각 체제 혹은 사회의 각 영역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뜻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모든 정치 체제에서 어떤 최소한의 규범적 공통분모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존 롤즈(John Rawls)의 것과 같은 최소 보편주의(minimum universalism)⁴⁾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3) 이에 관하여는 Judith Shklar, "Liberalism of Fear", *Political Thought and Political Thinkers*(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3-20쪽. Richard Roty, "Human Rights, Rationality and Sentimentality",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편,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1993*(New York: Basic Books, 1993)111-134쪽 참조.

4) 원래 롤즈의 고유한 개념으로 하자면 인민들(peoples) 사이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가 될 것이나, 그 보다 알기 쉬운 파렉(Bhikhu Parekh)의 분류로 설명해 본 것이다. 파렉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과 관련하여 ‘상대주의-도적적 단일주의-최소 보편주의’의 구분법을 제시한다.(Bhikhu Parekh, "Non-ethocentric Universalism", Tim Dunne and Nicholas J. Wheeler 편, *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38쪽. 그 최소 보편주의는 도넬리(Jack

물론 그 인권과 자유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툼이 있을 것이다. 롤즈가 제시한 최소한의 인권⁵⁾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해하건대, 롤즈가 말하는 인권의 취지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롤즈의 초점은 각 체제가 자신의 이념을 논리적 판철할 때 생길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곧 체제의 목적 추구에 대한 한계설정으로서의 인권을 말함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인권이 여러 체제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멀고 가까움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체제의 전유물이거나 특정 체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계설정으로서의 인권이란 어떤 체제이든 그 자체의 정의관에 따라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목표에 집착하여 인간 존엄이 무시되거나 수단화될 것을 걱정할 뿐이다. 즉 체제의 오남용으로 빚어질 수 있는 폭력과 천대로부터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북한에게 권하고자 하는 인권과 자유의 정신도 바로 그것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일수록 권력의 한계는 경시되기 쉽고, 그에 따라 국가에 의한 폭력과 천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주의적 혁명의 열정은 반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의 가혹함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도덕과 정의로 철저히 무장하면 할수록 그 ‘적’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는 더욱 커진다. 반혁명분자들은 ‘인간쓰레기’이며 그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얘기하며, 집단에 헌신하는 인간성을 요구하는 이상국가를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 혹은 인간개조를 통해 도덕적 공동체를 꿈꾸던 국가는 거의 모두 혹독한 독재로 귀결되었다는 역설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서구 자유주의에 합리적 본질

Donnelly)의 잘 알려진 구분법 ‘급진적 상대주의-강한 상대주의-약한 상대주의-급진적 보편주의’에서는 약한 상대주의와 강한 상대주의 중간 쪽에 위치할 것으로 여겨진다.

5) 롤즈는 국제사회의 공통적 지반인 인권의 범위를 ‘절실한 권리’들로서 제한한다. 즉 생존의 권리, 노예와 예속 상태로부터의 해방, 소유권(일신상의 소유권), 양심의 자유(그러나 평등한 자유는 아니다), 형식적 평등 등이 그것이다.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페이퍼백판. 2001), 65쪽.

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교훈에서 연유할 것이다. 도덕적 권위를 독점하는 국가권력에는 국가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제의 일체성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체제이념은 불가침의 것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진실의 추구, 즉 언론과 사상, 정보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체성의 요구가 강해지면 체제의 권위가 신성시되고 교조화된 공식이 진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당한’ 체제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가치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사실이나 심지어 역사도 퀘어 맞추어지게 된다. 주체농법이 점점 과학적 진실과 동떨어지게 되면서 대기근의 주요 원인이 된 것도 결국은 자력갱생 및 식량자급이라는 체제의 요구가 너무 비대해진 탓이리라.

주지하듯이 북한의 체제는 거의 종교적 공동체의 수준이며 주체사상은 절대적인 지위에 있다. 그러나 서양 중세를 ‘위조의 시대’라고 부르듯이, 절대적 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념적 정당성을 위해 삶의 진실이 아니라 ‘공식화된 진실’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지당한 일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신화가 진실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한다. 물론 어떤 체제이든 진실은 정치, 선전 혹은 환상에 의하여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하지만 인권과 자유가 살아 있다면 진실은 결국 회복되며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유지된다.

북한은 이러한 인권과 자유의 정신을 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이는 북한 체제의 이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점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것이다. 이는 특히 향후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즉 중국의 개혁이나 일본 메이지 유신 혁명의 과정 혹은 남한의 개발독재의 과정을 봤을 때에도 인권과 자유가 없다면 그것이 소망스러운 발전이 될지 의문이며, 혹 체제 개선이 실패하여 중국 문화혁명과 같은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하면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IV. 인권적 개입의 문제점들

북한에게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각성은 절실하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인권적 개입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 개입이 아직까지 북한에게 그러한 각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인권적 개입을 돌아켜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과연 얼마나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충실한지 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국제 사회의 인권적 개입에 순수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에서 인권적 개입에 어떤 다른 이해관계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비현실적이다. 사실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노련한 정치적 기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뒤바뀌는 경우이다. 즉 인권적 관심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면 이는 인권적 개입이 아니라 인권 침해적 개입에 불과하다.

먼저 미국을 보면, 미국 부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 대외정책을 주도하였던 네오콘(neocon)들은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미국의 사명론(Manifest Destiny)에 입각하여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여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이른바 불량 국가들(rogue states)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시 제2기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노골적으로 6자회담을 중지하고 북한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공공연히 선동한 바 있다.⁶⁾

6) 네오콘의 한반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네오콘의 대변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에 “이 전제국가를 부셔버려라”라는 기고문을 실었고, Nicholas Eberstadt, “Tear Down This Tyranny: A Korea Strategy for Bush's Second Term”, *Weekly Standard*, 2004년 11월 29일. 네오콘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빌 크리스톨은 “신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하여”라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William Kristol, “Toward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 2004년 11월 22일 여론주도층에 대한 메모,

<http://www.newamericancentury.org/northkorea-20041122.htm>.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도 비록 그 전신인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보다는 순화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도구로써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그 법은 인도적 지원에도 인도적 조건을 붙여 제한을 두고 있으며, 경제협력과 원조 등에는 엄격한 인권적 조건을 붙여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그 법에 규정된 탈북자 지원책은 그렇지 않아도 대량 탈북 사태를 기화로 북한 정권교체를 도모하려는 네오콘들의 전략에 봉사할 우려도 있다.⁷⁾ 또한 최근에 그 법에 따라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된 레프코워츠(Jay Lefkowitz)는 그가 북한인권문제에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 알 수 없을뿐더러, 취임 일성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의 인권상황과 연계할 듯한 발언을 한 것도⁸⁾ 상서롭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북한에 대한 인권적 관심은 피랍자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피랍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명백한 인권적 요구사항이다. 일찍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그에 대하여 시인하고 사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생존자와 그 가족의 귀향이 잇따랐다. 그러나 사망자의 유골반환의 문제에서 일본은 북한 측이 건넨 유골이 가짜라고 발표하여 버렸고 사태는 어려워졌다.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과학 전문지 네이처(Nature)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발표는 과학적으로 성급했고, 와다 하루키의 지적에 따르면 외교상으로는 결례였다고 보인다.⁹⁾ 하여튼 가까 유골이라는 것에 격앙된 일본 여론 속에 또 하나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예컨대 일제 식민지배 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문제는 완전히 파묻혀 버렸으니, 일본의 인권적 개입은 그저 이기적 차원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7) 대표적인 예로서 Duncan Currie, "Kim Jong Honecker?: Our Strategy for Dislodging the North Korean Tyrant Should Recall East Germany", *Weekly Standard*, 2005년 2월 21일. 여기서 커리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개방하면 대규모의 탈북사태가 야기 될 것이고, 그것은 곧 김정일을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과 같은 신세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대량탈북사태가 야기되면 북한 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만이 아니라 '국제 평화의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가 강제력을 동원할 명분도 생김에 주의해야 한다.

8) 「美인권특사, 北인권-식량지원 연계 가능성 시사(종합 2보)」, 연합뉴스, 2005년 09월 09일.

9) 이에 관한 내용은 和川春樹(와다 하루키), 「납치 유골 문제의 해법」,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6일.

유엔의 경우에도 대북한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은 지나친 바가 있었다. 북한이 지적한 선택성과 이중성의 문제를 부인할 수 없다. 유엔 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신장에 노력한다면 북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중국이나 미국 등에 대하여도 발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 테러전쟁 및 이라크 전쟁에서 초래된 인권침해는 현재 유엔이 다루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태도는 최근 전 세계의 인권상황의 악화의 주요인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을 꼽고, 관타나모 기지의 수용소를 이시대의 굴락(Gulag)이라고 표현한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적 일관성 대조된다.¹⁰⁾

또한 유엔은 북한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위기를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¹¹⁾ 한국전쟁과 그 이후 실재하였던 갈등들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단지 허황된 피해의식만은 아니다. 더욱이 평화권은 1984년 유엔총회의 “인민의 평화권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에서 이미 공포된 바 있지 않은가? 특히 한국전쟁에서 유엔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쟁을 벌써 50년이 넘도록 불안정한 휴전상태로 두고 있는 것은 유엔의 책임방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북한의 저개발 상황에 비추어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유감이다. 이는 북한의 고유한 발전모델의 인정가능성의 차원만이 아니라, 무역과 경제원조를 인권문제와 결부시키지 말 것을 주문한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의 내용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반대의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태도에도 미흡한 구석이 있다. 유럽은 북한과 인권대화를 시작한지 별로

10) 문제는 단지 수용소에서의 부분적 일탈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와 학계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포로 신문에서 고문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고문금지의 국내외의 법에서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이는 지난 곤잘레스(Alberto Gonzales) 미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11)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의 시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제거를 인민의 생명권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CCPR/C/PRK/2000/2, 11쪽 32절

오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인권위의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물론 인권대화와 유엔의 활용을 병행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불공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유럽은 1990년대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에 대한 결의안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동 결의안 발의를 포기하였지만, 중국과의 인권대화는 1995년 이후 계속 지속되고 있다.¹²⁾

이렇듯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개입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인권적 개입이 불신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입장책임은 개입을 하려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 인권을 설득하려는 측은 그 자체 역시 인권적 덕목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의 인권에 관여할 때,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 체제에 대한 모욕과 경멸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V. 인권적 협력의 방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적 개입이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인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권은 체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인권은 어떤 체제이든 인간의 존엄의 저지선일 뿐이며 인권이 어떤 특정의 체제를 지시하거나 다른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는 곤란하다. 따라서 인권을 서구 자유주의의 전유물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일도 삼가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만이 인권적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북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인권적 개선은 생각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12) 중국과의 인권대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는 Philip Baker, "Human Rights, Europ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Quarterly*, 2002, 45-63쪽 참조.

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 사회가 인권적 능력이 아주 없지는 않으며, 또한 반대로 서구사회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여도 인권적 문제는 어디나 있다고 하는 상호적 인식에서 출발할 것이 요망된다. 곧 상호존중과 겸허함이 필요하다.

이는 존 롤즈가 말한 만민법(the Law of Peoples)의 정신이기도 하다. 롤즈는 국제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악덕으로 상대 체제에 대한 모욕과 경멸을 꼽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덕목은 관용이라고 본다. 롤즈는 국제사회란 자유주의적 국가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자유주의가 아니면서도 괜찮은(decent) 체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일인일표의 민주주의나 평등한 양심의 자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면서 나름대로의 정의관에 의하여 통치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이런 관점에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존중, 즉 북한 체제가 지금 아무리 영락하였더라도 나름대로 인권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저력에 대한 존중이다. 북한은 항일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또 미국의 침략도 물리치고 나아가 중국과 소련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민족자주와 자력갱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는 자부심을 거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페허 위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사회경제적 성취는 팔목할 만한 것이었다.¹⁴⁾

지금은 그 우리식 사회주의가 파국을 맞이하였고 그 민족자주의 투쟁의 역사는 신화적으로 분식(粉飾)되어, 북한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란 것이 기이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견고한 듯하다. 사

13) 롤즈는 괜찮은 비자유주의적 국가로서 카자니스탄(Kazanistan)이라는 일종의 가상적인 이슬람 체제를 예로 들고 있다. John Rawls, 앞의 책, 75쪽.

14)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초토화 작전과 그로 인한 북한의 황폐화 정도에 대하여는 브루스 커밍스의 책에 잘 나와 있다. Bruce Cummings,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 김정일 코드』(남성욱 옮김, 따뜻한 손, 2005). 그 설명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서 악명이 높았던 네이팜탄은 한국전쟁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79쪽) 휴전을 맺을 당시 북한의 22개의 도시 가운데 18개가 적어도 절반은 파괴되었으며, 함흥과 흥남 등 대규모 산업도시가 80~85%, 사리원 95%, 신의주 100% 진남포항 80% 평양 75%가 파괴되었다고 한다.(97쪽) 뿐만 아니라 미국은 냅들도 폭파하여 강 유역의 농민들을 몰살시키고자 하였다고 한다.(94쪽) 이런 폐허에서 북한은 국가재건에 성공하여 영국의 저명한 여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이 1964년 북한을 방문하고 이를 세계 경제사의 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회의 봉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요는 감지되지 않으며,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3%가 기회가 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이며,¹⁵⁾ 또한 국제 민간기구인 '국제난민(RI)'의 조사에 따르면 65명의 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이유로 탈출한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¹⁶⁾

특히 항일유격대의 고난의 행군 시절 유격대원들 간에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애는 가족 국가(family state)¹⁷⁾ 혹은 유격대 국가¹⁸⁾의 역사적 연원이 되는데, 이는 일찍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유격대 정신으로"라는 구호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는 현재 북한이 과국의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그들은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동지들 간의 우애 그리고 자기희생의 덕성이 충만하고 고루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그리고 실제로 성취가 없지도 않았다. 다음과 같은 CIA의 극동문제전문가 헬렌-루이스 헌터(Helen-Louise Hunter)의 보고를 보자. "전쟁고아들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능가하는 사실 등과 같은 여성 지위의 급격한 변화, 무상 주택, 비교적 수준 높은 국가차원의 예방의학, 최근 기근 이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 낮은 유아사망률과 평균수명, 조직화된 매춘이 없다는 것, 매수하기 힘든 경찰"¹⁹⁾

이러한 북한의 이념과 역사가 인권적 차원에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

15) 「2004 탈북자 실태보고서】<1> 본지 국내거주 100명 설문조사」, 세계일보, 2004년 9월 16일

16) 「[거주 탈북자 3만~5만명 추정」, 세계일보, 2005년 5월 14일.

17) 이는 Bruce Cummings의 표현이다. Bruce Cummings, 앞의 책, 28쪽.

18) 이는 와다 하루기의 표현이다. 利川春樹(와다 하루기),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서동판/남기정 옮김, 돌베개, 2005), 128쪽 등 참조.

19) Bruce Cummings, 앞의 책, 280쪽에서 개인용. 나아가 1980년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의 방문기가 전해 주듯, 그들은 범죄가 없는 나라를 꿈꾸며 감옥도 또한 원래는 창살이나 울타리가 없는 교도소를 생각하고 있다. Luise Rinser, 『또 하나의 조국: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한민 옮김, 중보판, 공동체, 1988), 164쪽 및 257쪽 참조, 이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강제수용소와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생각하면 참으로 역설적이며 따라서 이상과 현실 혹은 선전과 실제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범죄발생률을 중요한 인권 척도로 보고 있다는 점은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논하며, 미국에는 흑인 청년의 4분의 1이 감옥에 있다고 한탄하는 대목은 인권의 의미에 대하여 곱씹어 볼 만하다.

다. 물론 혁명의 과정과 혁명권위의 비대화로 인하여 결국은 모든 주민의 인권이 체제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다지만, 그 나라 인민들이 역경 속에서 추구해 온 이상과 그들이 한 때 도달했던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상호존중의 정신을 유지한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은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전통과 제도를 존중하며 그에 따른 인권과 자유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체제를 초월하는 그리고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북한에도 인권보장의 원리와 법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인권보장은 이미 위천, 인덕정치라는 지도자의 책임과 배려 그리고 관료들의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자기자신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기쁨과 아픔을 자기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 주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그리고 “고생은 남보다 먼저하고 낙은 뒤로 미루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맡아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이고 로동계급의 당원이다.”라는 등의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²⁰⁾

북한의 통치이념과 원리가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그것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의 근거로 삼지 못할 까닭은 없다. 예컨대 강제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와 폭력은 그 체제 이념인 인덕정치와 교화라는 행성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재적 접근이 북한 인권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필자로서는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일선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소위 ‘낮은 단계에서의(low-level)

20)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전집』 제13권, 456-488쪽, 이 논문은 원래 노동신문, 1994년 11월 1일자에 발표된 것이다. 한편 위의 인덕정치에 관해 인용한 구절들 중 맨 끝의 것은 마치 중국 신유학자 범중엄(范仲淹)이 얘기한 “세상이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세상이 즐거워한 이후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유교적 지식인의 사명감을 연상케 한다는 점도 추가하고 싶다. 范仲淹, 「岳陽樓記」, 『古文眞寶』 後集, 卷6.

인권침해²¹⁾)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대로 북한 체제의 결함을 내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체제의 한계로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각성이 요망된다. 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주입한다면 이는 협력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북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즉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중앙 정부의 통제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인권과 자유의 원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서구의 자유주의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인식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이다. 물론 앞서 말한 당 관료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촉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이라는 한계를 모르는 집단주의적 이념국가에서 그러한 문제가 단지 인덕정치라는 배려와 시혜의 차원에서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 예컨대 최고 통치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부기관에서 체제이념에 기한 권력의 오남용이 있는 경우 절대적 체제의 특성상 그 가혹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체제이념의 보호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덕을 독점하고 일체성을 요구하는 체제에서는 권력의 오남용과 부정부패의 위험성은 너무 커서 그것을 ‘위로부터’ 막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대항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인권의 한계설정기능을 뜻한다. 각 개인들에게 인간존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인정해 주고 부정행위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인권으로 호소하고 응징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문제 즉 권력의 오남용 및 부정부패 등은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자유주의 체제는 그 문제의 해결

21) 이 개념에 대하여는 Andrew Hurrell, "Power, Principles and Prudence: Protecting Human Rights in a Deeply Divided World", Tim Dunne and Nicholas J. Wheeler 편, 앞의 책, 287쪽 참조.

을 권력의 도덕성과 배려에만 맡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른 응징과 구제에 맡긴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의 힘이라는 것은 불법, 부정 및 인권침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회복성과 지속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 이념에 기초한 권위주의 국가는 애초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사회를 꿈꿀지 모르나, 대개 과욕은 미흡 보다 더 큰 폐해를 부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국제사회는 개인의 존엄, 범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법적 구제절차의 보장 등 인권과 자유의 기본 원리들에 관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얘기가 북한의 체제를 아주 바꾸는 쪽으로 전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권력의 오남용과 부정부패의 방지와 같이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및 범치주의의 개념은 어떤 체제이든 적용가능하며, 설사 군주제 하에서도 그것이 왕도정치를 지향하는 한 필요한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북한의 인덕정치를 보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 폐기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다.

VI. 예측과 희망

인권적 협력을 얘기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 그와 같은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관심을 기울일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심각하다. 황장엽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몰락의 한 원인으로 헬싱키 협정(Helsinki Accords)에서 인권문제의 양보를 꼽았다고 한다.²²⁾ 인권과 자유를 배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북한이 인권적 개입에 협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예측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투명하며, 상당 부분 기대 혹은 희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독일의 신속한 통일과정을 예측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듯이, 북한 체제가 대파국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래 지속하리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2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한울, 1999), 328-329쪽.

필자는 예측보다 기대와 희망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²³⁾

필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현상유지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에게 주어진 국가재건의 책무에 대한 자의식이 뚜렷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전통은 설사 전제군주라고 하여도 전체 인민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여 왔다. 북한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민위천(以民爲天)을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더욱 그럴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단지 자신의 절대권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친 김일성에 이어 전 국민의 영도자로 남고자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체제의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흥미롭게도 정작 김정일 위원장 자신은 중국의 모델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스웨덴과 태국을 꼽았다고 한다.²⁴⁾ 스웨덴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김위원장의 개념은 학자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으며 스웨덴의 체제에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 알 수는 없지만, 스웨덴을 모델로 꼽은 것은 북한의 체제이념이 이상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한편 스웨덴 말고 또 꼽은 것은 태국인데, 그 까닭은 왕실의 전통이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시장경제를 착실히 진행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군림은 하되 통치는 않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하곤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구도에 대하여 걱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독재 혹은 군주제에서 그렇듯이 후계문제는 체제 유지에서 가장 커다란 도전이다. 독재 체제는 권력승계에 대한 안정된 룰이 있을 수 없기에 항상 불안

23) 북한의 붕괴를 예측한 학자들은 많지만 특히 네오콘의 한반도 전문가 에버슈타트의 경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1990년부터 그러한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하여 왔다. Nicholas Eberstadt, "The Coming Collapse of North Korea", *The Wall Street Journal*(동부 판), 1990년 6월 26일자 참조. 그러나 그의 주장들은 단지 과학적 분석만은 아니고 기대와 희망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는 북한이 통상적인 스탈린체제로 연명할 수 있다고 하는 다소 이색적인 얘기를 하여 흥미롭다. Nicholas Eberstadt, "Pyongyang's Option: 'Ordinary' Stalinis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제168권 3호, 2005년 3월호, 30-35쪽.

24) 이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이다. Madeleine Albright, 「매들린 올브라이트: 마담 세크러터리」 제2권(백영미/김승옥/이원경 옮김, 황금가지, 2003), 372쪽.

과 갈등을 배태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에 관하여 뤼디거 프랑크(Ruediger Frank)는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적 통치를 합리적 통치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²⁵⁾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위원장이 최초로 내놓은 논문, 그래서 더욱 중요한 논문의 제목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는 그 논문에 대하여 “‘충효일심론’이 쇠퇴하였고”, 대신 “근대 합리성의 강조”가 담겨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⁶⁾

북한의 주체사상은 지금은 수령중심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근대 합리성과 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수령론과 정치사회적 생명론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 사상에 내재한 인간 주체성의 강조는 개개인 혹은 집단의 역량에 큰 탄력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다.²⁷⁾ 그렇다면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1920년대 터키의 혁명과 같은 위로부터의 혁명 또는 프랑코 총통 이후의 스페인과 같이 점진적인 입헌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²⁸⁾

필자는 너무 순진하다는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족적 지상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하였듯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의 인지적 한계를 넘는 일이나, 현재 주어진 당위의 과제는 우리의 이성에 명백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위로 파악되는 한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된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것이다.’라는 칸트의 명제를 상기하자. 북한의 체제 개선은 성공하여야 한다. 이는 물론 한반도 전체를 위하여 큰 성취가 아닐 수 없으며, 김 위원장으로

25) Ruediger Frank, "the New Image of Kim Jong-il: The First Step towards a New Leadership Model", *Nautilus Institute*, <http://www.nautilus.org>, PFO 04-49B: 2004년 11월 19일.

26) 和田春樹(와다 하루키), 앞의 책, 252쪽.

27) 나아가 ‘주체’의 영어 번역인 self-reliance가 공교롭게도 미국 사상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이 미국의 정신으로 설파한 단어와 같듯이, 북한의 체제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로 나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28) 이는 놀란드의 구분에 따른 것인데, 그 자신은 후자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Markus Noland,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심달섭 옮김, 시대정신, 2004), 41쪽.

서도 더할 나위 없는 영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각성이 필수적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쩌면 김정일 위원장은 인권문제에 관한 신뢰할 만한 카운슬러를 찾고 있는지 모른다. 인권에 헌신적이면서 북한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며 북한을 보다 합리적인 체제로 이행시키는 데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김 위원장은 아주 반갑게 맞이할지도 모른다. 1994년 핵문제로 인한 북미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 역할을 생각해 본다. 그의 용기있는 실천, 즉 그와 김일성 주석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필자는 그 때를 떠올릴 때마다 한민족의 상황에 서러움을 느끼며 동시에 카터(Carter) 전 대통령(그리고 추가를 하자면, 전쟁 위험을 미국 조야에 알리고 카터의 중재를 적극 추천 하였던 레이니(James Laney) 전 주한 대사, 경수로의 대안으로 타협의 돌파구를 찾은 해리슨(Selig Harrison) 등)에 대한 감사의 염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귀인(貴人)들을 간절히 고대한다.

VII. 양심과 책임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가 북한 정권에 너무 우호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는 환상이며, 대화와 협력은 단지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니,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정권을 고립시키고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제임스 리치(James Leach) 하원 의원에 따르면 북한인권법도 그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²⁹⁾

그러나 이는 우리의 양심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무책임하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흔히 가족국가 혹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국가 혹은 가족적 유대에 기초한 유격대 국가라고 하듯이 고도의 공동체주의 국가이다. 특히 북한의 수령중심주의는 그 정치사회적 생명론에서 알

29) James A. Leach, Speech at the Conference "Prospects fo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CSIS와 조선일보 공동주최, 2005년 5월 17일,

수 있듯이 거의 종교적인 수준에 있어, 수령과 영도자가 곧 공동체를 뜻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을 분리한다는 것은 곧 북한 체제를 봉괴시킨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사람들은 정치권력의 성공적 교체를 생각할지 모르나 북한 내에는 예전의 동구 민주화 운동의 경우처럼 잠재적인 시민사회나 민주화운동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폴란드의 바오로 교황과 같은 정신적인 지주도 없으며 그 기반을 이루는 가톨릭이라는 국민적 종교도 없음을 상기하자.³⁰⁾ 북한에서는 오히려 주체사상이 국민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숨진 김일성과 김정일이 교황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급하게 행동에 나서 김정일 체제를 쫓아내지 않으면 끔찍한 정치범수용소의 고통과 탈북자들의 고난만 연장시키는 격이라는 비판은 준엄한 것이긴 하나,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³¹⁾ 김정일 체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북한의 통일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 통일성이 깨어지게 된다면 무정부적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군은 그에 대하여 이미 작전계획 5029을 마련해 두고 있듯이 이는 곧 전쟁을 뜻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과산된 국가의 안정과 재건의 구심점이라는 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대적 지배자였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대기근이라는 체제의 패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혼란과 아노미적 혼란을 피하고 체제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김정일의 존재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적 상황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은 괴롭지만, 국제사회 의 책임이란 최선의 방도를 모색하는 데에 있지, 최선의 결과를 바로 달성하는 데

30) 예전의 동구권 사회와 북한 상황의 차이에 대하여는 페퍼가 잘 설명하고 있다. John Feffer, "The Forgotten Lessons of Helsinki Human Rights and U.S.-North Korean Relations", *World Policy Journal*, 2004년 가을 호 32-33쪽.

31) 페퍼는 이에 관하여 우선 대규모의 인도적 재난, 더 강경한 세력이 대두할 가능성, 북한 이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위의 글, 38쪽.

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무리한 변화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냥 현실을 수용해야 하는 때가 있다. 심정윤리(Gesinnungsethik)는 북한 체제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단절, 나아가 적극적 행동주의를 촉구하지만,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는 그에 따르는 결과까지 포함하여 전체적 상황을 통찰할 것을 요구한다.

책임윤리의 예로서 필자는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통일성과 노예제 폐지에 있어 전자를 중시한 선택을 들고 싶다. 링컨은 몇몇 주들에서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노예해방령에서 그 주들을 제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당장에는 심정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었지만, 종국에는 모든 노예해방에 더 잘 기여할 수 있었으니 노예해방론자인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다.

링컨을 존경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도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도 역시 현재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전체 인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부인하기보다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그 지도력 하에 체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첨언하자면, 한국전쟁 후 남한에서 자행된 가장 큰 인권유린은 광주학살이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사회가 전두환 정권에 어떤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오히려 학살 후 1년 남짓한 때에 남한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국제사회는 인권유린의 군부독재에 큰 상을 준 셈이다. 필자는 올림픽 유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의 선정이 독재권력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포용이 군부독재에서 입헌민주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가능케 한 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VIII. 결어

필자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세를 돌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즉 북한 인권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개입 또한 인권적으로 다듬어져야 함을 얘기하였다. 그리하여 검사가 범죄자를 일방적으로 신문하듯 하는 개입이 아니라 상대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충고하는 협력적 방식을 얘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협력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서도 북한에게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인권고등판무관은 벌써 북한과의 연락을 시도한 바도 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최종안에는 북한의 체제 개선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에는 북한인들도 참여하는 교육과 문화의 교류에 관한 프로그램이 추가되기도 하였다.(법 sec.102-(a))

문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지엽적인 것일 뿐 전체적인 기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 기조가 바뀌기를 희망한다. 인권의 정신에 투철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정중함과 애정을 잃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절실히 있다. 이에 관해 인권외교의 새 지평을 연 카터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의 말과 그리고 빌 라멜 차관과 동행하였던 패리(Richard Lloyd Parry) 기자의 북한 인상기의 다음과 표현을 인용해 보겠다.

“우리는 긴 여정을 막 시작하였다. 개개인의 존엄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사회의 인민들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전통에 따라 그 근원적 염원에 대한 그들 고유의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³²⁾

“어째서, 북한처럼 절도있고, 자부심 강하고, 순수한 인민들이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하였을까?”³³⁾

32) Cyrus Vance, "Human Rights and Foreign Polic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77년 5월 23일. 이 글은 원래 같은 해 4월 30일의 조지아 대학에서의 연설로 행해진 것이다.

33) Richard Lloyd Parry, "Beauty and Innocence in the Last Stalinist State: Letter from North Korea", *The Times*, 2004년 9월 15일

지금까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였는데, 끝으로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한마디씩 추가해 보겠다. 남한은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고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여 왔다. 이는 아마도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내정간섭 금지와 상호 존중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비방 중지의 약속을 의식한 탓이리라. 그러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마당에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핵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천명하고 실천하였듯이,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며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장래 이와 같은 자리가 또 있다면 북한에서 온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북한에게도 권유한다. 그들이 진정 “참다운 인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국제사회의 광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미국, 유럽, 남한 어디나 좋을 것이다.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실도 좋은 대화 상대가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하여 시인과 사과를 하였듯이, 인권 문제도 밝힐 것은 밝히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길 바란다. 인류의 인권문제가 비단 북한뿐이겠는가. 모든 인류의 평화와 인권의 증진이라는 대의에 협력한다고 생각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북한 인권, 협력적 개입, 인권의 상대성과 보편성, 국제사회의 책임

[abstract]

A Collaborative Approach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ai-Uk Chung*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intains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the collaborative approach toward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can be taken in two phases as follows.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upposed to respect the North Korean traditions and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their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according to their traditions. Seco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upposed to engag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for the reason that human rights constitute the limits of any political system without demanding a regime change.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own principl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ere is no reason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recognize that as the basis of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Of cour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do more about the grave human rights problem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s limits to their regime. If that is unilaterally admonished and inculcated, however, this cannot be a collaborative approach. It is recommended to start with the issues realized by North Korea itself and try to cope with them cooperatively.

* College of Law, Yeungnam University

In these cours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expect to make North Korea reach the spirit of human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the individuals.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such a collaborative approach do not have to move toward the regime change. Kim Jeong-Il may be looking for a reliable counselor with regard to human rights. Kim would welcome with all his heart those who respect North Korean tradition and history, and listen carefully their advices how North Korea could transform itself toward more reasonable system,

Key Words : North Korean Human Rights, Collaborative Engagement, Relativism and Universalism,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